

#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법률안

## (박수현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3112 |
|----------|-------|

발의연월일 : 2025. 9. 18.

발 의 자 : 박수현 · 양부남 · 이개호  
서삼석 · 임오경 · 한정애  
김영배 · 김준혁 · 윤종오  
이정문 의원(10인)

### 제안이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 무분별한 정보의 생산·유통은 확산되고 있으나, 이를 분별력 있게 이용하고 판단할 수 있는 미디어 교육은 중앙부처, 지자체, 시도교육청 등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함.

뉴스·잡지·도서 등을 활용한 읽기문화 진흥으로 비판적 미디어 수용능력의 기반인 문해력을 제고하고,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비판적사고와 현상에 대한 입체적 사고를 함양하여 미디어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 OTT·영화 등과 같은 영상물 체험 및 창작을 통한 문화역량 제고와 미디어 과몰입 예방, 저작권 교육 등 통합적인 미디어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범정부적 미디어교육 체계 마련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미디어문화역량증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

조).

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둠(안 제8조).

다.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지침을 마련하며, 시행기관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평가 후 위원회에 제출함(안 제9조·제11조).

라. 유치원 및 어린이집, 초·중·고·대학교 등 학교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대한 국가 지원을 규정함(안 제12조).

마. 미디어교육 전문성 강화 및 품질제고를 위해 미디어교육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해 규정함(안 제14조).

바. 위원회 및 미디어문화역량 증진지원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회 운영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안 제17조·제18조).

##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미디어문화역량 증진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책임을 정하고, 미디어문화역량 증진의 정책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디어”란 사람과 사람 또는 기계와의 소통을 매개하는 도구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

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인터넷신문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인터넷뉴스 서비스

마.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애니메이션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행물,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외국간행물

자. 그 밖에 정보를 전달하거나 소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도구 또는 수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미디어문화역량”이란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관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디어와 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 및 문화콘텐츠에 대한 접근, 비판적 이해, 창의적 · 윤리적 소통, 민주시민으로서의 참여 능력을 말한다.

3. “미디어교육”이란 미디어문화역량을 증진하고 지원하는 교육을 말한다.

4. “학교미디어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 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미디어교육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미디어교육사”란 미디어에 대한 이론적 · 실천적 지식을 바탕으로, 미디어교육에 관한 기획 · 실행 · 분석 ·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 국가가 자격을 부여한 자를 말한다.

6. “미디어교육 전문인력”이란 미디어교육사를 포함하여 미디어교육 관

런 공공기관에서 미디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학교미디어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미디어교육 관련 연구·정책 수립 및 평가·국제교류 등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7. “협력기관”이란 소관 분야의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과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8. “시행기관”이란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도교육청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3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연령, 종교, 장애, 인종, 지역, 사상·신념,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에 차별 없이 미디어문화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국가는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협력기관 및 시행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 간의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미디어문화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5조(미디어 및 문화 관련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 미디어 및 문화 관련 사업자는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에 관한 다른 법

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미디어문화역량증진위원회 운영) ①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 ·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미디어문화역량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조정한다.

1. 제9조에 따른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평가 지침 마련 및 심의 등에 관한 사항
3.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과 관련된 정책의 소관 조정 및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정책 및 사업의 조정 ·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제5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1명이 된다.

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차관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2. 위촉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미디어 문화역량 증진 지원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소관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미디어교육 또는 미디어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나. 미디어교육 또는 미디어교육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험이 있는 교사, 미디어교육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3.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⑧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정책협의체의 구성 ·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디어문화역

량 증진 지원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협력기관, 시행기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2. 미디어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3. 민관(民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협의체의 구성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기본계획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의 기본원칙과 추진 목표 및 방향
2.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의 연도별 세부 지원계획
3.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과 관련된 정책의 소관 조정 및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관련 조사 · 연구에 관한 사항
5.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이해도 제고 및 이용에 관한 사항
6. 미디어교육 콘텐츠 개발 · 보급에 관한 사항
7. 미디어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8. 미디어교육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미디어를 통한 공공복리 증진 및 문화 다양성 확산에 관한 사항

10.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1.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에 필요한 시설 · 장비의 확충과 지원에  
관한 사항

12.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관련 국제교류 · 협력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시행기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시행계  
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  
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출받은 시행계획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제7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 미디어 및 문화 관련  
사업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에 대한 성과평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정책 및 사업의  
종합성 ·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에 대한  
성과평가 지침을 마련한다.

② 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성과평가 지침에 따라 매년 소관 정책 및

사업의 추진실적을 자체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행기관의 장은 제2항의 성과평가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성과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전문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심의 및 공개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 · 방법, 제4항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 · 운영,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 공개의 대상 · 방법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영유아 및 학교미디어교육의 활성화) ① 국가등은 제2조제4호 각 목에 따른 학교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학교의 미디어 관련 교과 또는 범교과 교육을 통한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학교의 미디어 관련 교과 또는 비교과 교육을 통한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학교미디어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미디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학교미디어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교 및 어린이집의 정규 교과과정 및 교육활동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사회미디어교육의 활성화) ① 국가등은 국민들의 미디어문화역량 증진을 위하여 미디어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이 운영하는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관련 교육 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미디어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미디어문화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등은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교육적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의 미디어문화역량 증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회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지원을 협력기관 및 시행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기관 및 시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14조(미디어교육 전문인력 양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디어문화역량 복지 지원을 위한 교육·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

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미디어교육사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미디어교육사 연수과정(이하 “연수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에게 미디어교육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미디어교육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디어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위반하는 경우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디어교육사를 대상으로 재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자격검정과 연수를 위하여 미디어교육사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지정된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격검정에 응시하거나 미디어교육사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으려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⑨ 제2항에 따른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의 운영, 제4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 제5항에 따른 재교육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제8항에 따른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 · 재교부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미디어교육 전문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등은 공공기관, 대학, 학회 등 미디어교육 관련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기관 간 협의체의 구성 ·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 ① 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 · 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 운영 및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경비지원 및 보조) 국가등은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국고에서 위원회의 운영 및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사업 등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언론진흥기금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제19조(국제협력) ① 국가등은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에서 우리나라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등은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2.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
3.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4.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과 관련된 국제평가
5.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과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6. 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